

고 발 장 2

고발인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고발대리인 최한수(투명사회국 간사)

서울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피고발인 : 김○○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 3급)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과 죄명으로 김○○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발할 범죄 사실

가. 피고발인 김○○은 1998. 9. 19.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팀에서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1998. 10.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의 11에 있는 주식회사 싸이버텍홀딩스(대표이사 김상배)가 구조개선사업 용도로 2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한 데 대하여 같은해 11. 3. 위 업체의 구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71.5점으로 평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대출기준에 적격)한 조사의견서를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선정위원회로부터 같은 11. 28. 위 업체의 신청대로 대출 결정케 하였고, 그 후 1999. 6월경 위 업체의 김인석 이사로부터 자기회사가 같은 해 8월경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40,000원에 50,000주 신주발행)하는 데 자기회사가 어려울 때 위 대출지

원이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이번 유상증자시 공단직원들에게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으로 5,000주를 배정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위 유상증자는 70%는 기관투자가, 20%는 위 업체의 직원, 나머지 10%는 공단 직원들에게 배정되었음)습니다.

다. 피고발인은 그 후 자신 뿐만 아니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서울지역 본부장 김○○(현, 감사실장) 등 공단 직원 9명을 물색하여 자신이 1,000주(주식취득대금 40,000,00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4,000주는 위 직원 9명에게 취득케하고 위 김○○ 등 9명의 공단직원들의 주식취득대금을 받아 1999. 8. 11. 자신과 위 김○○ 등 공단직원 9명의 주식취득대금 계 200,000,000원을 위 업체의 계좌(신한은행 여의도지점, 계좌번호 264-05-013907)로 입금하여 위 주식 1,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양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하여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은 그 후 1999. 12. 11.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후 2000. 1. 25.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총 8회에 걸쳐 주당 30,500원에서 232,000원씩 총 689,985,120원(수수료 별도)에 위 주식 10,000주를 매도하여 649,985,120원의 매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2. 고발할 죄명

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발인을 형법상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발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발인을 공직자윤리법위반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덧붙여 피고발인이 취득한 매매차익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불법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액 몰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뤄질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더욱 명백히 밝혀 공명정당하게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증거자료 (별첨자료로 첨부)

가. 감사원 인사자료

2001. 8.14

고발인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대리인 최한수 (투명사회국간사)